

경운대학교 대학원장학금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대학원학칙 (제29조)에 의거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 구분)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가. 본교출신 장학금
- 나. 복지장학금
- 다. 군인 및 공무원 장학금
- 라. 현직 교직원 장학금
- 마. 근로장학금
- 바. 외국인 장학금
- 사. 교직원추천 장학금
- 아. 교직원가족 장학금
- 자. 특별장학금
- 차. 기타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다. 외부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 라. 기타 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제4조(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개인이 장학생을 추천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제시조건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 또는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6조(장학생 배정 및 선정) ①장학생의 인원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내장학생 선발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및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장학금 지급) ①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등록 전 학비감면하여 지급한다.

2. 교외장학금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 중복금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중복지급은 허용하지 않으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한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급중지) 장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을 한 자
3.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기타 학생본분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자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종류	지급조건	장학비율
본교 출신 장학금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출신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30%, 수업료 50%
복지장학금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장애인(1-3)급 재학생 ②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30%, 수업료 50%
군인 및 공무원장학금	공무원 및 군인의 신분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50%
현직교직원 장학금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현직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수업료 50%
근로장학금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학부 및 행정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월 일정액 지급
외국인 장학금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30%, 수업료 50%
교직원추천장학금	본교 교직원의 장학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30%, 수업료 50%
교직원가족장학금	본교 교직원, 본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수업료 50%
특별장학금	학교명예를 더 높이거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수업료 100%